

연구보고서

토건 90-081-1

# 標準安全管理費 適用의 定着化 研究

1990. 12.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 제 출 문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 정착화 연구”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990. 12. 31

주관연구부서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토목건축 연구담당

연 구 자 : 책임연구원 유명식  
책임연구원 박인철

여 백

## 목 차

1 . 서 론 .....	1
1.1 안전관리비의 의의와 작성 절차 .....	2
1.2 안전관리비와 일반공사비의 특성 .....	4
2 . 관련 연구실적과 문제점 .....	6
2.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	6
2.2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출기준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위한 연구조사 .....	6
2.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정착화에 관한 연구 .....	7
3 . 연구목적 및 단계 .....	9
3.1 연구 목적 .....	9
3.2 연구단계 .....	9
4 . '90년도 연구사업 .....	10
4.1 '90년도 계획 .....	10
4.2 '90년도 계획변경 .....	10
4.3 안전관리비 계상, 사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1
5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안) .....	23
6 . 결 론 .....	25
〈부 롤〉 .....	27

1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	29
2 . 표준산업분류와 건설업법상의 건설공사 분류	33
3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 분류	36
4 . '90년도 건설표준 품셈 (발췌)	49
5 . 공사원가 계산서	61
6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	62

## 1. 서 론

건설업은 인력, 장비, 시공방법, 기자재, 자금등의 생산수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사에 필요한 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영에 있어서의 공사관리는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및 원가관리가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고 이 기능 가운데 안전관리는 상호 복합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서 타기능과의 유기적 연계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각 기능간의 균형상태가 깨어지게 되면 재해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증대된다. 건설업에 있어서의 재해는 건설공사의 특수성때문에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 건설재해는 타업종에 비하여 높은 재해율 ( 23.0 % : '89 노동부통계 ) 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4,900억 원 ('89 노동부자료) 에 이르고 있어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하여 정부는 1981년 12월 31일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근본적으로 건설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 노사간의 안전의식 결여, 기업주의 안전관리분야 투자 기피 등으로 건설재해 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코자 정부는 1988. 2. 15일 고시 제 88-13호로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이를 다시 보완하여 1989. 2. 10일 고시 제 89-4호로 개정 시행해 왔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계상이나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규정이 애매하고, 또한 고시

에 의한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주로 관급공사만이 대상이 되어 왔고, 민간공사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90년 1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공포하여 모든 건설업을 행하는 자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고시 제 89-4호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비용의 적용항목등이 단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현장적용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건설업계등 사계의견 수렴, 건설현장에서의 실태조사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비 적용의 정착화를 도모코자 본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의 경험부족, 자료부족등으로 인한 안전관리비의 산정, 사용계획수립, 승인, 집행 및 정산등의 구체적 업무의 정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몇차례의 시도로 종국에는 초기의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 1.1 안전관리비의 의의와 작성절차

안전관리비를 요약하면 무재해로 공사를 준공하는데 소요되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비용이다. 말은 간단하지만 그 비용이나 항목을 명확하게 나타내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안전관리비의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기 어려우며 시공시의 안전우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적 비용과 항목이 많을 뿐더러 일정시간내에 적산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사업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시공에 합리적인 대책을 수

립, 실시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예산은 유형적인 것 이외에도 무형적인 사항도 요구되고 각 항목간에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예산을 빠트림없이 편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특성, 작업내용 및 작업간의 상호연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또 위험에 대해 예측하고 그러한 위험을 제거해 가면서 안전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첫째 ; 현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적출하고,

둘째 ; 적출된 것에 효과적으로 적용될수 있도록 각종 안전 시설비 등과 그 활용 SYSTEM을 고한하고

셋째 ; 이를 그 현장기능에 적용하여 모든 유해사항이나 위험요소를 제거하므로써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는 대별하여 인건비, 물품비, 용역비의 3개 항목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시공현장의 공정별 또는 공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시킬수 있도록 성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1) 안전보건 인건비에 소요되는 비용
- (2) " 시설에 "
- (3) " 장비에 "
- (4) " 교육에 "
- (5)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6) 기타 각종회의비, 포상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2 안전관리비와 일반공사비의 특성

### (1) 사용 목적

공사비는 주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공사비는 본 구조물 축조에 직접소요되는 비용이고, 간접공사는 가설비등의 직접공사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안전관리비라는 분야를 광의의 의미로 해설할 때 간접공사비를 안전관리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협의의 의미에서 공사비는 발주자측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공측의 자체인력의 보호 즉, 자기보전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이다.

### (2) 추구이념

일반적으로 공사비는 경제적인 이익, 즉 이윤의 추구라는 이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윤의 추구(경제적 손실방지)와 함께 인간존중이라는 도덕적 이념을 지니고 있다.

### (3) 산정 기준

일반공사비는 설계 및 시방서를 근거로 세부항목별 가격에 의한 적산을 그 산정기준으로 삼으며,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의 일정요율에 의해 산정된다.

### (4) 과거 경험

일반공사비는 한국건설업의 발달과정을 거쳐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나 안전관리비는 현재 가설공사중 극히 일부 항목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항목 성질상 가설적인 형태로 지출되고 그 사용 경험에 의한 자료가 거

의 없는 상태이며 업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5) 계약상의 특성

일반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으로 발주자측의 요구사항을 도급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비는 가설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계약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6) 감독

일반공사는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을 감독하는 발주자측의 현장 상주 공사감독관에 의해 항상 적부 및 양부가 판단되나 안전 관리는 공사 감독관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 2. 관련 연구실적과 문제점

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시행되었던 과거의 연구실적과 도출된 문제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2.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 1987년 국립노동과학연구소

목 적 : 공종별, 규모별 적정 안전관리비 산출

결 과 : 노동부 고시 제 88-13호 (1988. 2. 15)로 공포

문제점 :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이 공사비 원가에다 일정요율을 곱한 다음,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비용을 계상케 되어 있으나, 그 비용내역이 불확실하여 실무작업이 어려움.

### 2.2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출기준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위한

#### 연구조사

연구기관 : 1988년 국립노동과학연구소

목 적 : 고시 제 88-13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수립

결 과 : 노동부 고시 제 89-4호 (1989. 2. 10)로 개정 공포

문제점 : 공사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종건설공사, 철도  
• 궤도공사, 일반건설공사 3종류로 분류하고 있어 실제 적용이 곤란하고 또한 비슷한 공사비의 공사간에도 부족 및 과다 책정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를 현실에

맞게 공사별, 공종별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전시설물에 있어서는 건설부제정 표준품셈 내용과 중복되는 등의 안전관리비 산정상 문제점이 있음.

### 2.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정착화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 1989년 공단기술위원회

목적 : 표준안전관리비 운영제도의 정착화

결과 : 제안 (1)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내용 및 방법등의 규정 신설

(2) 현행 고시에서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공종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하고, 안전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선임

(3) 발주자는 입찰시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준수사항 및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건 제시

(4) 시공자는 입찰가 선정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부합되는 안전관리비를 공사 입찰가에 계상

(5) 시공자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 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에 제출, 적절성 여부를 판단 받으며, 시공중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안전관리비 실행에 대한 자료 제출 등 9가지

문제점 : 상기 연구는 표준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의 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연계 연구사업으로서 공사별, 공

종별 적정액 산정 및 품셈화 등 안전관리비 적용의 정  
착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가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져  
야 함.

### 3. 연구목적 및 단계

#### 3.1 연구목적

전술한 3차에 걸친 연구결과 및 고시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차례에 걸쳐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비 사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현실에 부합된 요율을 도출하고, 현장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사용기준을 개발하는 등 현행 고시내용을 개선하여 안전관리비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코자 함.

#### 3.2 연구단계

##### (1) 제 1 단계 ('90년도)

-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현행 고시(제 89-4) 내용의 보완 및 개정

##### (2) 제 2 단계 ('91년도)

- 공사종류 및 규모의 세분화
- 안전관리비 요율조정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구체화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의 표준화
- 고시 개정(안)

##### (3) 제 3 단계 ('92년도)

- 제 2 단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항목별 품셈화
- 필요시 고시 개정(안)

## 4. '90년도 연구사업

### 4.1 '90년도 계획

#### 4.1.1 추진 방향

- 실적조사통계 내용분석 ('90)
- 공사규모별, 공종별 세분화 적용기준 연구 ('90-'91)
- 기본비용 및 별도계상비 선정기준 연구 ('90-'91)
- 별도계상비용의 품셈화 ('90-'92)

#### 4.1.2 추진 계획

주 요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1/4	2/4	3/4	4/4
◦ 실적조사통계 내용분석				
◦ 별도계상비 적용 현장 실태조사				
◦ 공종별 규모별 적용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 보고서 작성				

### 4.2 '90년도 계획변경

#### 4.2.1 계획변경 사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개정중인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선정기준 ( 고시 )에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을 안전관리비로 통합하여

이의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연구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내용 중 별도계상비 적용현장 실태조사는 조사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취소함. ( 토건 1014, '90.10.5 내부결재 )

#### 4.2.2 추진방향(변경)

- 실적조사 통계 내용 분석 ('90)
- 공사규모별, 공종별 세분화 적용기준 연구 ('90-'91)
- 현행고시(제 89-4) 내용의 보완 및 개정

#### 4.2.3 추진계획(변경)

주 요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1/4	2/4	3/4	4/4
◦ 실적조사통계 내용분석				
◦ 공종별 규모별 적용연구				
◦ 현행고시 내용의 보완 및 고시 개정(안)				
◦ 보고서 작성				

### 4.3 안전관리비 계상, 사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안전관리비는 계상에서 시작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공사준공시의 정산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인 산정, 사용계획수립, 승인, 집행 및 정산으로 종결처리 되어야 한다.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로 모든 건설업을 행하는 자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표준안전관리비를 공

사금액에 계상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되는 현행 고시 제 89-4 호 (1989.2.10)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부록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 참조)

#### 4.3.1 산정 (계상) 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 현황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3 가지 법령에 의거 각각 다르게 분류되어 있다.

- 통계법에 의한 분류(부록 2. 참조)
- 건설업법에 의한 분류(부록 2. 참조)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분류(부록 3. 참조)

현행 고시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표시한 바와 같이 일반건설공사,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로 3분류 하고 있다.

공사규모는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으로 3분류 하고 있으며, 요율은 공식  $Y = P \cdot X + C$  (여기서 Y는 안전관리비, P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C는 기초액)로 산정하게 되어 있다.

##### (2) 문제점

공사분류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서 건설공사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로 되어 있

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공사가 건설업법에 의한 분류에 의거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고시의 표준안전관리비계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분류에 의거 공사를 3종류로만 분류하고 있어 공사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현행 공사규모분류는 3가지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 발주, 시공되고 있는 공사규모가 점차 대형화 추세에 있고, 건설재해는 오히려 중소규모의 공사현장에서 점차 대형화, 다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규모와 범위는 재조정 되어야 하겠다. 현행 요율은 그 대상액을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료비에는 관급자재(지급자재)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현행 요율산출시의 적용대상(직·간접재료비, 직·간접노무비의 합계액)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안전관리비를 산정하는 공식은  $Y = PX + C$  ( $Y$ : 안전관리비,  $P$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X$ : 안전관리비 요율,  $C$ : 기초액)로 기초액  $C$ 의 값은 물가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일정한 값으로 산정되므로 발주자 또는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민간 발주공사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적게 계상하기 위하여 고의로 지급자재비를 증액할 우려도 있다.

\* 참고 : 회계예규 2200.04-122-2 ('89.2.10)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사무 처리 규칙 제 7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및 공사현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한하여 이를 관급할 수 있다.
-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회계예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 10 조 및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 (3) 개선방향

공사종류 분류는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의 취지가 빈번하는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건설재해를 조사, 분석할 때에 적용하는 공사 분류방법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공사분류에 의하되 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용이하도록 (건설업법상의 분류가 보다 현실적임) 현행 분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함이 현실정에 더욱 근접하는 방법이 되겠다.

#### 일반건설공사 (400)

- 건축건설공사 (40001)
- 교량건설공사 (신규)
- 도로건설공사 (40002)
- 기계장치공사 (40003)
- 기타건설공사 (40004)

### 증건설공사 (401)

- 고체방(댐) 등 신설공사 (40101)
- 수력발전 시설 신설공사 (40102)
- 터널 신설공사 (40103)

###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402)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40201)
  -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40202)
- \* ( )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상의 사업종류 및 사업세 목의 번호임.

공사규모는 그간의 발주 내지는 시공중인 공사의 실적을 감안하여 규모의 구획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요율의 조정도 규모의 현장방문조사 및 설문조사에 의하여 표본은 대표성을 갖도록 표본설계시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공사 규모의 구획도 재검토 되어야 하겠다. 요율조정을 할때에 대상액에 관급자재비도 포함되도록 표본조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기초액 (O)은 매년 수정 고시하는 여부와 기초액 (C)을 포함하지 않는 요율 공식 사용 등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

#### 4.3.2 사용계획 수립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 현황

현행 고시 별표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주요내용에는

(가) 기본비용(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통으로 산정해야 하는 안전관리비)

(나) 별도계상비용(각 건설공사 현장 특성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책산하는 안전관리비)

로 나누어 명기되어 있으며 실지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으로 고시된 것은 기본비용에 국한되어 있고 주요내용의 각 항목별 세부사용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 문제점

(가) 현행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있어 별도비용에 있는 항목들은 공사의 특성에 따른 분류 라기 보다는 일반관리비와 중복되는 항목들을 분리해 놓은 것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나) 기본비용이나 별도계상비용의 항목별 세부사용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5, 1989.1.1) 제9조(경비) 제3항 제14호로 안전관리비가 경비에 포함되어 있고, 건설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부록 4. '90년도 건설표준품셈 참조) 제1장 적용기준 1-21절 안전관리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은 별도계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무비 성격의 교통정리인, 안전감시인, 재료비 및 노무비 성격의 안전시설 등을 현장 실정에 따라 산출하도록 간략히 기술되어 있고 또한 제2장 가설공사에 재료비 및 노무비 성격의 낙하물방지(2-9절), 가설울타리(2-11절) 및 보호막설치(2-14절)등

안전시설물( 일부 )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관리비를 일괄적으로 경비에 포함시킬수도 없는 실정이다.

- (래) 더욱이 건설부 표준품셈 안전관리비 절에서 표지, 바리케이트, 방호책, 조명시설 등 제반 안전시설의 비용에 대해서는 현장 실정에 따라 산출한다고만 기술되어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나 품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적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및 심사기준 개정(안)에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첨부 제출케 되어 있으나 사용 계획서의 구체적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 (3) 개선방향

- (개)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을 통합하고 각 항목별 세부사용기준을 제시한다.
- (나) 표준안전관리비에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안전장구, 위생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정리정돈, 건강진단비,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안전시설은 현행 건설부 표준품셈에 포함시키켜 산정케하되 미비한 내용을 개발 보완해야 할 것이다.

( \* 건설부와 협조사항 )

- (다) 안전관리비에 대한 이윤 지출을 막기 위하여는 현행 공사원 가계산서(부록 5. 공사원가계산서 참조)에서 안전관리비를 경비란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윤의 다음란에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 재무부와 협조사항 )

상기 대내외 사항들은 경험과 자료의 부족으로 단기간에 성취하기 어려우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년차적으로 꾸준히 관련 기술 및 자료를 수집평가 하여 관련기관(건설부, 재무부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작성에 애로가 없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 4.3.3 승인, 집행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 현황

시행 규칙 제 6 편, 제 1 장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 등에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제 123 조, 작성기준) 제출(제 121 조, 첨부서류)하여 검토(제 122 조, 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제 124 조, 확인)을 받도록 규정된 건설공사 규모를 제 120 조 제 3 항(대상사업장의 종류)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 최대기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건설등의 공사
- 제방높이 20미터 이상인 댐건설등의 공사
- 계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3킬로그램 이상인 잠함공사
- 깊이가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 작업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로서 수급업체의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32조(안전관리비의 사용)에는

### ◦ 수급인과의 공동사용

도급인인 사업주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수급인에게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도급인인 사업주의 책임하에 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사용내역서, 작성보존

도급인인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건설현장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은 사용내역서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 (2) 문제점

[개]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규모의 건설공사 현장

에서는 안전관리비의 송인 집행 사항을 검토 내지는 확인 할 수 있으나 이외의 공사, 물론 소규모공사 이긴하나, 현장에서는 단지 사업주내지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에게 이의 사용, 집행감독 및 협의조정의무를 지우고 있을뿐 달리 감독, 확인 할 방안을 제시치 않고 있다.

- (네) 오늘날 건설공사 발주건수가 폭주하고 있고, 안전관리비 사용이 전공사 기간을 통하여 집행되는 성질의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 노동부 산하 감독기관의 능력(인력)으로는 모든 대상현장을 감독 하기란 심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3) 개선방향

- (개) 안전관리비의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작성요령을 구체화 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네) 모든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서를 공사 착공전 및 완공후에 각각 제출케 하여 이를 토대로 자료축적을 도모하여야 한다.
- (다) 송인, 확인등의 업무를
- 1) 유해·위험 요소가 많은 공사현장 내지는 일정도급금액(혹은 계상된 안전관리비) 이상의 공사현장으로 한정
  - 2) 건설안전 용역업체를 활용
  - 3) 노사협의회 활용
  - 4) 공사감독 내지는 건설용역업체에 위임
  - 5) 상기 방안의 조합

#### 4.3.4 정산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 현황

- 개 현행 법규에는 정산원칙을 규정한 것은 없다.
- (내) 재무부 회계예규 2200.04-104-10 (1988.7.1)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3조(설계변경 등) 제1항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연히 공사량의 증감은 안전관리비의 증감을 유발케 된다.

### (2) 문제점

- 개 안전관리비가 가설적이기 때문에 직접공사비처럼 품셈화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산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 (내) 정산을 할 경우 확인 및 승인문제, 증액이 된 경우에는 추가 지급문제, 감액이 되는 경우 차액환수 문제가 야기된다.

### (3) 해결방안

- 개 장기간에 걸쳐 관련 기술자료 축적으로 품셈화를 기한다 하여도 건설공사 설계변경(정산)처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서 표준안전관리비 운영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그 운영내용에 대한 제도와 지도감독 방안과 함께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 일본에서도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내)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선진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QUANTITY SURVEYOR 등에 의하여 공사원가 계산시나 견적  
시에 당해 공사 안전보건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반영  
케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 안전관리비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계상하는  
데서부터 사용에 이르기 까지 경영관리총에서 올바른 이해  
가 있어야만이 실효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 5.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안)

앞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으나 현시점에서 수정 내지는 보완이 가능한 현행고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보완 하였으며, 공종별, 규모별 요율조정은 '91년도에 실시 될 것이다.

### 5.1 고시제목 변경

현행고시는 단지 노동부 고시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으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고시개정(안)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법정제도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계상 및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제목을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안)”으로 변경하였다.

### 5.2 고시 내용의 보완

- 적용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명기하였다.
- 산정기준을 계상기준으로 변경하고,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을 통합 조정 하였다.
- 계상시기를 계상 및 기록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시행규칙 제32조에서 규정되어 있어 삭제

하고, 사용기준으로 변경하였다.

**5.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부록 6.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안) 참조)

## 6. 결 론

안전관리비 제도의 정착은 공사금액을 계상하는데서 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시공자, 건설안전 주관부처 및 관련 전문가 공히 기술자료의 축적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현행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을 점차 시정해 감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안전관리비 제도의 정착은 단순히 안전관리비의 이용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넓게는 건설안전관리와 병행 추진되어야 하겠다.

- (1) 발주자 측에서는 공사의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잠재 유해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관련되는 안전사항을 특기 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예가 산정 단계에서는 법규에 정한 표준 안전관리비를 펼 히 계상하여야 하며, 입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당해 공사 관련 실적등 뿐 아니라 건설 재해 예방 기여도도 고려하여야 하며, 현장 설명 단계에서는 관련 법규 준수 및 안전 시설 설치를 강조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수립의 검토 및 집행 상태를 부단히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 (2) 시공자 측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수립 시에 과거에 시공한 바 있는 동일 내지는 유사 공사 등에서 경험 한 바 있는 안전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현장의 특성에 적절한 안전 관리 조직을 편성하여 법규에 정한 바대로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시공 계획이 변경되면

안전관리계획 역시 적절한 수정을 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경험한 안전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 (3) 건설안전 주관부서 및 전문가는 건설재해 예방기법 및 제도개선, 창출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사현장에서의 현장점검, 안전진단 및 중대재해조사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안전관리비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총에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이 실효를 거둘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

록

부

여 백

##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

제정 1988.2.15 고시 제 88-13 호  
개정 1989.2.10 고시 제 89- 4 호

**제 1 조 ( 목적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산정 기준을 제정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 이하 “ 안전관리비 ” 라 한다 ) ” 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그 주요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 기본비용 ”이라 함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서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 별도계상비용 ”이라 함은 기본비용 이외의 각 공사 현장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라 함은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 성준칙 ( 재무부 회계예규 2200,04-105-5 1989.1.1 ) ”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지정의 금액을 말한다.
5.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령 및 예산회 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 4 조 ( 공사의 분류 )** 이 고시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산업재해보험 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에 의 한다.

**제 5 조 ( 산정기준 )** ①이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건설공사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비용을 계상한다.

1.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이 5억 원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에 별표 2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이 5억 원이상 50억 원미만일 때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에 별표 2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 (C)을 합한 금액

③법령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비용 이외에도 각 공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빈도계상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 계상시기 )**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 5 조의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 안전관리비의 사용 )** ①원청자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내에서 하수급인에게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

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원청자의 책임하에 하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이 고시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별표 1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방지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부 칙

1. 이 고시는 1989. 2. 10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주요내용

1. 기본비용(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통으로 산정해야 하는 안전 관리비)

가.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나. 안전보호구, 위생보호구, 안전장구 등 각종 안전보건장구에 소요 되는 비용

다.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각종 안전보건직무교육 및 사내 안전보 건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정리정돈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 이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

2. 별도계 상비용 (각 건설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적산하는 안전관리비)

- 가. 안전탑, 안전표시, 경고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 나. 교통정리와 안전감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다. 추락, 낙하, 붕괴, 낙반, 방지설비, 방호책, 바리케이트, 건설기계안전장치, 조명시설 등 법령상의 안전설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 라. 건강진단비, 위생설비, 급수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 마. 기타 현장조건에 따라 법령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하여 별도계상에 필요한 비용

【별표 2】

건설공사종류 및 규모별 기본비용 산정기준표

공사분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비율 (%)	기초액 (C)	
중 건 설 공 사	3.18 (%)	2.15 (%)	5,148 천원	2.26 (%)	
철 도, 궤도신설공사	2.33 (%)	1.49 (%)	4,211 천원	1.58 (%)	
일 반 건 설 공 사	2.48 (%)	1.81 (%)	3,294 천원	1.88 (%)	

예시 : 1.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이 50억 원인 중건설공사의 기본비용은 113백만원임.

2.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이 10억 원인 중건설공사의 기본비용은 26,648천원임.

## 2. 표준산업 분류와 건설산업상의 건설공사 분류

부 문 별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세분류	건설업법상의 공사분류
일반(종합) 건설업부문	51111 주택도급건설업 51112 사무 및 상업용건물 도급건설업 51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 도급건설업 51120 건물자영건설업	2. 건축공사
	51210 도로건설 및 포장공 사업 51220 교량 및 고가로건설업 51230 땅 및 저수시설건설업 51240 터널, 지하철 및 철 도건설업 512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목건설업	1. 토목공사
특수공사		1. 철강재설치공사 2. 준설공사 3. 포장공사 4. 조경공사
전문 건설업부문	52100 배관, 난방 및 관련 공사업	12. 설비공사

부 문 별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세분류	건설업법상의 공사분류
	52200 도장, 도배 및 실내 장식공사업	5. 도장공사
	52310 전기공사업	
	52320 통신공사업	
	52410 석공사업	4. 석공사, 6. 조적공사
	52420 미장공사업	3. 도장·방수공사
	52430 방수, 방습 및 내화 공사업	
	52500 목공사업	1. 목공사
	52600 지붕잇기 및 합석공 사업	9. 지붕·판금공사
	52711 철골공사업	11. 철물공사
	52712 철근공사업	10. 철근·콘크리트공사
	52720 건물장치물 설치공사업	12. 설비공사
	52730 유리공사업	8. 창호공사
	52740 창호공사업	
	52750 비계 공사업	7. 비계 공사
	5276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 철근·콘크리트공사
	52810 토목공사	2. 토공사
	52820 굴정공사업	14. 보링·그라우팅공사
	52830 건축물 해체공사업	7. 비계 공사

부 문 별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세분류	건설업법상의 공사분류
	52840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4. 보링·그라우팅공사
	52910 직수 및 수중공사업	17. 수중공사
	529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문직별 공사업	
		13. 상·하수도 설비공사
		15. 철도·궤도공사
		16. 포장유지보수공사
		18. 조경식재공사
		19.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건설공사분류

#### 400. 일반건설공사 (27/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건설공사 또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및 기계장치, 도로신설 등 일반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내에서 행하는 사업</li> </ul>
40001 건축건설 공사	<p>건축 및 교량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li> </ul> </li> <li>◦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li> <li>◦ 철풀,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하는 공사</li> <li>◦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 (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li> </ul>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설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건축물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건축물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li> <li>• 당해 건축물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 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li> <li>• 당해 건축물내외의 급수 및 급탕등의 설비공사</li> <li>• 당해 건축물내외의 안전 및 소화등의 설비공사</li> <li>• 당해 건축물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조절 등의 설비공사</li> <li>• 당해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츄부방수공사</li> <li>• 당해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li> <li>• 당해 건축물내에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li> <li>• 기타 건설물의 설비공사</li> <li>• 건물내의 아이스 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li> </ul> </li> </ul> </li> </ul>

사업세목	내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li> <li>- 내장, 유리, 온창, 조원 등의 기타 전문제공사</li> <li>◦ 교량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li> <li>- 기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공사</li> <li>- 선창의 건설공사</li> <li>- 도로, 철도, 궤도, 수로 등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이상의 교량의 시설공사</li> </ul> </li> </ul> <p>※ 총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적용할 수 있는 공사와 본 예시표상 중건설공사, 내용예시와 동일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p>
40002 도로신설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li> <li>- 기설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li> <li>-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 (사리산포공사 포함)</li> <li>- 도로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li> </ul> </li> </ul>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p>미 만의 터널공사와 건축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미 만의 교량건설공사</li> </ul>
40003 기계장치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의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 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li> <li>-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공사</li> <li>-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li> <li>- 보일러, 기중기, 장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li> <li>-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li> <li>-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li> <li>- 색도 건설공사</li> <li>- 화력 및 원자력 발전시설의 설치공사</li> <li>-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li> <li>-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li> <li>- 기계장치의 수리공사</li> <li>-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li> <li>-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li> </ul>

사업세목	내용예시
	<p>( 단, 산세정공사 제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해 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li> <li>-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li> </ul> <p>※ ○ 총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적용할 수 있는 공사는 본 예시표 상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일반건설공사, 내용예시와 동일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p> <p>○ 여기에서 수리공사란 일반경상보수 이외의 것을 말한다.</p>
40004 기타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li> <li>-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li> <li>-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li> <li>- 기설의 도로, 철도, 궤도 등의 보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 ( 기설 도면에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 포함 )</li> <li>-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충선공사 등</li> </ul>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옹벽축조의 건설공사</li> <li>- 기설도로 또는 플렛홈 등의 포장공사 ( 사리 산포, 잔디부치기공사 등 포함 )</li> <li>-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li> <li>- 하천의 연재, 제방수문, 통문, 갑문 등의 신설 개수에 관한 공사</li> <li>- 관개용수로, 기타 각종 수로의 신설개수, 유지 에 관한 공사</li> <li>-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 사</li> <li>- 저수지, 광독침전지, 푸울장 등의 건설공사</li> <li>- 사방설비의 건설공사</li> <li>-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 사 (40101) 세목의 고방제방 (댐) 등 신설공사 이 외의 공사</li> <li>-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 립 등의 공사</li> <li>-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li> <li>-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 공사</li> <li>-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 ( 기 초공사 포함 )</li> </ul>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흡관, 지중선, 동재 등의 매설공사</li> <li>-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li> <li>-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li> <li>-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li> <li>-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li> <li>- 체토사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li> <li>- 과선교의 건설공사</li> <li>- 철탑, 연돌, 풍동 등의 건설공사</li> <li>-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li> <li>- 문,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li> <li>- 용광로의 건설공사</li> <li>-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li> <li>-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공사</li> <li>- 신호기의 건설공사</li> <li>- 상수도관 세척공사</li> <li>-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li> </ul>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li> <li>○ 후각사업세목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 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li> <li>○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 지사, 출 장소 등이 단순히 서무, 영업, 기획, 인사, 경리,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 사업의 세목 기타 각 급 사무소에 분류한다.</li> </ul>

#### 401. 중건설공사 (47/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40101 고제방(댐) 등 신설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방의 기초지반 (터파기 밀나비가 10 m이 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 가 20 m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 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li> <li>—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li> <li>— 제방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 사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li> <li>—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 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li> </ul>

사업세목	내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li> <li>-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li> <li>-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li> <li>-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li> <li>-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개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li> <li>-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li> <li>-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li> </ul>
40102 수력발전 시설 신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 신설공사 및 터널 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li> </ul>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p>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력 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 는 기초공사</li> <li>- 수력 발전시설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li> <li>- 수력 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li> <li>- 수력 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 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li> <li>- 수력 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li> <li>-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조절지(저수지)의 신설공사</li> <li>- 수력 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칭 프란트, 시멘트 사이로, 골재 운반용의 벨트 콘베이어 등 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li> <li>- 수력 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정관개용수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 댐 시설공사</li> </ul>

사업세목	내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력 발전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li> <li>- 기타 색도건설공사</li> </ul> <p>※ 총칙 제 5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적용할 수 있는 공사는 본 예시표상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일반 건설공사내용 예시와 동일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p>
40103 터널 신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li> <li>- 터널신설 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항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 내면설비공사</li> <li>-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의 산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 전등 및 전화의 가설 등의 건설공사</li> <li>◦ 도로, 철도, 궤도, 수로 등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 만원 이상의 터널신설공사</li> <li>◦ 지반에서 10 m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li> </ul>

사업세목	내용예시
	<p>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 신설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li> </ul>

#### 402.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43/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4020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 ( 다만,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기타 건설로 분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li> <li>- 철도 및 궤도신설공사에 따른 역사·파선교,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li> <li>-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와 병행하는 4,000만 원 미만의 터널공사</li> <li>-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미만의 교량신설공사</li> </ul> </li> </ul> <p>※ 총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분리 적용할 수 있는 공사는 본예시표상 종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 내용예시와 동일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p>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40202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li> <li>◦ 지반으로부터 10m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li> </ul> <p>※ 다만,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충선공사와 철도, 궤도의 보수복구공사는 기타 건설공사에 분류</p> <p>※ 주 : 이 사업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p>

## 4. 90년도 건설 표준품셈(발췌)

### 제 1 장 표준품셈 적용기준

#### 1-1 목 적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질적인 향상과 공사비의 적정산정 및 시공 현대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 1-2 적용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건설공사에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 1-3 적용 방법

- 가. 설계에 적용할 표준품셈은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른다.
- 나. 본 표준품셈은 정부건설공사 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종, 공법을 기준 하였으며, 지역이나 기후의 특수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하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도록 한다.
- 다. 표준품셈 및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표준품셈 및 이 기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 라. 공사비 산정시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

여 기계화 시공과 인력시공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정 산정한다.

마.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부분(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을 각 기준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정의 품은 해당 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바.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사. 본 표준품셈에 따르지 아니하고 별도로 특수품셈을 결정하여 적용할 때에는 품셈의 보완을 위하여 토목·건축·기계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자료를 건설부로, 기타 전기·통신 품셈·등은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 1-7 재료 및 자재단가

가. 건설재료 및 자재단가의 결정은 거래실례가격을 기준한다.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 1-8 주요 자재

가. 공사에 대한 주요 자재의 관급은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재무부 회계 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KS 규격 품을 우선한다.

라. KS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  
( 외국 규격 등 )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 【참고】 회계예규 2200·04-122-2(89.2.10)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한하여 이를 관급할 수 있다.
2. 제1호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 참고 사항 )

1. 이 회계 예규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22-1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을 회계예규 2200·04-122-2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으로 한다.

### 1-21 안전관리비

가.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나. 개량공사

- (1) 현도로의 개량공사기간 (공사준비기간은 제외)에 대하여는 1개월을 25일로 하고 1일에 보통인부 2인을 표준으로 하여 계상한다. (보통 규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
- (2) 이에 가산되는 교통정리인이 필요한 도로 교차점, 건널목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1개소당 1일 보통인부 1인을 가산한다.

#### 다. 포장공사

- (1) 노반공사와 포장공사의 작업일수에 대하여는 보통인부를 1일 1~3인 계상한다.
- (2) 일반 교통이 없는 공사에는 계상하지 않는다.

#### 라. 안전 감시인

현도로 및 철도의 개량공사에 있어서 차량을 통과시키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정리인 외에 교통량에 따라 다음 안전감시비를 계상할 수 있다.

$$\text{실공기 (월)} \times 0.7 \times 25 \times \frac{\text{기존 노선의 개량연장}}{\text{총 공사구간 (연장)}} \times \text{단가 (보통인부)}$$

#### 마. 안전시설

공사 시공에 따른 표지, 바리케이트, 방호책, 조명시설 등 제반 안전시설의 비용에 대해서는 현장 실정에 따라 산출한다.

### 1-22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및 기타

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재무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나. 시공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 (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1-26 지하지반의 추정

지하지반은 토질조사 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 설계하고 시공중 확인된 상태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 1-27 우물통 기초공사

우물통 기초굴착시 굴착토량은 외토 (外土) 침입율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1-28 운반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

운반로의 신설 또는 유지 보수는 작업량을 감안하여 작업속도가 증가됨으로써 신설 또는 유지 보수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일 경우에만 계상해야 한다.

#### 1-29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가.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 한다.

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 용량적재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운반적재량은 운반로의 종별 (공도, 사도) 및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라. 화물자동차의 표준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1. 기구 손료는 인건비의 5%이며 재료할증, 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2. 강판 비계다리 손율은 2~8의 “다”(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3. 높이가 30m 이상에서는 매 3.5m 증가마다 품을 10%씩 증가한다.

### 【해설】

1. 본 표는 강판 비계 다리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때를 기준한 것이다.
2. 비계다리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을 기준한 것이다.
3. 본 표의 강판 비계다리 폭은 0.9m이며, 계단 참은 길이 5.4m, 폭 1.8m를 기준한 것이다.

### 2-9 낙하물 방지

( m<sup>2</sup>당 )

구분 종별	철 망 ( m <sup>2</sup> )	발 ( m <sup>2</sup> )	비계목 ( 개 )	못 ( kg )	철 선 ( kg )	비계공 ( 인 )
철 망	1.1	-	1	0.05	0.28	0.03
발	-	1.1	-	0.05	-	0.04

1. 철망의 규격은 # 21 아연도금 철망이며, 손율은 30~50 %이다.
2. 발은 소모품으로 한다.
3. 복재 손율은 외부비계에 준한다.

### 【해설】

1. 철망 및 발치기 품은 높이 7 m 이내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비계목은 짧게 비계목(길이 3.6 m)이다.
3. 본 품은 기존 비계를 이용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의 재료 및 품이다.
4. 철망 및 발치기에 있어서 높이 7 m 이상일 때에는 외부 비계중 외줄 비계 매기 품에 준한다.
5. 가설 기준
  - (가) 지상에서 높이 3.5 m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circ}$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는 필요한 부분 높이 15 m 이내 마다 방지망을 설치한다.
  - (나) 낙하물 방지망은 10 mm 눈크기 이하의 철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발, 망 등을 친다.

## 2-10 건축물 보양

( 보양 면적  $m^2$ 당 )

구분 보양개소	종 류	단위	수 량	품 (인)	비 고
콘크리트	가마니양생 살 수	매 -	0.12 -	(인부) 0.012 (인부) 0.004	
석 재 면 테 라 조 면	하드 롱지 풀	$m^2$ $kg$	1.2 0.06	(인부) 0.01	
타 일	톱 밥	$\ell$	30	(인부) 0.002	
기 타 부 분	목 재 못	$m$ $kg$	0.007 0.02	(건축 목공) 0.03	

- 재료의 손율은 100%이다.
- 가마니는 신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6-1 콘크리트 (건축공사 콘크리트) 타설품을 계상한 경우 본 표의 콘크리트 보양품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 【해설】

- 석재면 보양에 있어서 벽면은 잔다듬까지, 바닥면은 정다듬까지는 보양을 고려하지 않는다.
- 바닥 석재면 보양시는 하드 롱지 대신 톱밥으로 한다.
- 보양이란 시공부분의 경화를 돋는 일과 파손이나 오염(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이며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 철거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 보양방법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양 생 개 소	양 생 방 법
<p>콘 크 리 트 목 공 사 , 치 장 재 대리석, 테라조, 일반석재 타 일 , 테 라 코 타 아 스 팔 트 , 방 수 총</p>	<p>살수, 가마니 덮기 하드롱지 바르기 또는 비닐 씌우기 하드롱지 바르기 판재, 각재로 주위 보호 가마니 덮기, 텁밥 깔기 가마니 덮기</p>

## 2-11 가설 울타리

### 가. 울타리 설치

( m당 )

재료 및 품 공종별	목 재 ( m )	철 재 ( kg )	못 ( kg )	목 공 ( 인 )	인 부 ( 인 )		콜탈 ( ℓ )
					가설	철거	
판 장 울 1.8 m	0.045	—	0.15	0.12	0.056	0.094	0.06
판 장 울 2.7 m	0.083	—	0.22	0.18	0.072	0.12	0.06
판 장 울 3.6 m	0.158	—	0.33	0.28	0.11	0.18	0.06
철조망울 1.8 m	0.008	철조망 14 m	0.03	0.027	0.055	0.044	0.03
철조망울 1.8 m	0.063	골함석 1.6 매	0.035	0.072	0.04	0.072	0.06

- 외부를 대패질 할 때는 대패질 품은 별도 가산한다.
- 페인트칠 할 경우의 재료 및 품은 건축부문 “칠” 공사편에 의거 별도 가산한다.
- 출입구의 문을 설치할 경우 재료 및 품은 별도 가산한다.

### 【 해설 】

1. 가설울타리 공사현장의 관리 보안상의 필요로 설치하는 것으로  
불필요할 때는 설치하지 않을 때도 있으며 재료, 구조, 미관 등  
에 대하여 시방서에 지정되어 있을 때는 그에 준한다.
2. 철조망울의 널재란의 “간격 20 cm 대각선”은 철조망을 수평간  
격 20 cm로 하여 기둥에 U형 못으로 고정하고 기둥간을 대각선  
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한다.
3. 가설표준

재료 공종별	기둥	버팀기둥	널재	띠장
판장울 1.8 m	7.5 cm 각 또는 통 나무 끝마구리 지 름 7 cm, 간격은 1.8 m, 지중매립 은 40 cm로 한다.	7.5 cm 각 또는 통 나무 끝마구리 지름 7 cm, 간격 은 3.6 m (기둥 하나 결름)로 한 다.	두께 1.2 cm	3×6 cm 각재, 간격 90 cm
판장울 2.7 m	9 cm 각 또는 통 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cm, 간 격은 1.8 m, 지 중매립은 60 cm로 한다.	9 cm 각 또는 통 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cm, 간격 은 3.6 m (기둥 하나 결름)로 한 다.	두께 1.5 cm	3×6 cm 각재, 간격 90 cm
판장울 3.6 m	12 cm 각 또는 통 나무 끝마구리 지 름 9 cm, 간격은 1.8 m, 지중매립 은 90 cm로 한다.	12 cm 각 또는 통 나무 끝마구리 지름 9 cm, 간격 3.6 m (기둥하나 결름)로 한다.	두께 1.8 cm	3×10 cm 각재, 간격 90 cm

재료 공종별	기 등	버 텁 기 등	널 재	띠 장
철조망을 1.8 m	7.5 cm 각 또는 통 나무 끌마구리 지 름 7 cm, 간격은 1.8 m, 지중매립 은 60 cm로 한다.		가시철선 지 름 $\phi 2\text{mm}$ (#14) 수평간격 20cm 대각선으로 보강한다.	
골 철판을 1.8 m	12 cm 각 또는 통 나무 끌마구리 지 름 9 cm, 간격은 1.8 m, 지중매립 은 90 cm로 한다.	12 cm 각 또는 통 나무 끌마구리 지 름 9 cm, 간격 3.6 m (기등하나 걸름)로 한다.	골함석 # 30 (66 cm × 180 cm)	

### 【해설】

1. 가설표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가 설 기 준
높 이	2.0 m
기 등	각 파이프 ( $60 \times 60 \text{ mm}$ )를 사용하고, 간격은 1.8 m, 지중매립은 25 cm로 한다.
버 텁 기 등	각 파이프 ( $60 \times 60 \text{ mm}$ )를 사용하고, 간격은 3.6 m로 한다.
널 재	$800 \times 2,000 \text{ mm}$ 의 칼라철판을 사용하고 겹침폭은 5 cm로 한다.
띠 장	C형강 ( $60 \times 30 \times 10 \times 2.2 \text{ mm}$ )를 사용하고 간격은 85 cm로 한다.

2. 기등 및 띠장의 재료를 원형 파이프 등으로 가설하고자 할 때  
에는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 2-13 건축물 현장정리

( 연면적  $m^2$  )

구 분	철 근 콘크리트조	목 조	철골조	조적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보통인부 (인)	0.15	0.07	0.07	0.07	0.15

### 【해설】

- 본 품은 공사중 옥내 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된 것이다.
- 청소용 소모품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2-14 보호막 설치

(  $m^2$ 당 )

구 분	단 위	수 량
보호막	$m^2$	1.05
비계공	인	0.02

- 보호막 손율은 60 %이다.
- 보호막 설치에 필요한 부속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이 품에는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 【해설】

보호막이란 기존 비계를 이용하여 시공 안전 및 미관 등을 목적으로 시공 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이다.

## 5.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分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사원가비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전력비 반비			
	경기	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간접노무비의 계상에 대하여, 재무부 회계 2210-591 (89.3.8) 호로 공사현장사무소에 편성된 현장소장 이하 청소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노무량 × 노무비단가를 적정하게 구하여 계상하되, 이것 이 어려운 때에는 공사종류, 규모, 기간을 고려하여 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게 하고 그율을 다음과 같이 보완 적용하게 하였다.
	사	기술비 기품질관리비 가지급임차료 보험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수도광열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축공사 14.5% 공사규모 : 토목공사 15.0 5억원미만 14% 6개월미만 13% 특수공사 15.5 5~30억원미만 15 6~12" 15 기타(전문, 전 30억원이상 16 12개월이상 17% 기, 통신 등) - 15% 위 3개의 산술 평균을 구하게 하였는 바 예시하면 건축공사, 10억원, 15개월일 때, 간접노무비율 = $(14.5 + 15 + 17) \div 3 = 15.5\%$ (예시)
		소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 6.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안)

**제 1 조 ( 목적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표준안전 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제정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그 주요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무부 회계예규 2200, 04-105-5 1989.1.1)”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상의 금액을 말한다.

3.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령 및 예산회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 4 조 ( 공사의 분류 )** 이 고시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에 의한다.

**제 5 조 ( 계상기준 )** 이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한다. 다만, 재료비에 관급 및 지급재료비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때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에 별표 2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 때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에 별표 2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제 6 조 ( 계상 및 기록 )**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5조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그 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7 조 ( 사용기준 )**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별표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주요내용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2. 안전장치, 안전보호구, 위생보호구등 각종 안전보건용품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사내 안전보건교육 및 기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정리정돈등에 소요되는 비용

5. 건강진단비, 구급기재등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의 작업중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7.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별표 2】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공사분류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계액	5억 원미만	5억 원이상 비율 (%)	50억 원미만 기초액 (C)	50억 원이상
중 건 설 공 사	3.18 (%)	2.15 (%)	5,148 천원	2.26 (%)
철 도 · 궤 도 신설 공사	2.33 (%)	1.49 (%)	4,211 천원	1.58 (%)
일 반 건 설 공 사	2.48 (%)	1.81 (%)	3,294 천원	1.88 (%)

예시 : 1.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이 50억 원인 중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는 113,000 천 원임.

2.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이 10억 원인 중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는 26,648 천 원임.

【별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연번	세 목	적 용 기 준	지 급 기 준	비 고
1	안전관리자 ( 전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300 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수 150인 이상 300인 미만 : 1인</li> <li>◦ 공사금액 300 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2인</li> <li>* 공사금액이 500 억원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추 가될때마다 1인씩 추가</li> </ul>	• 월급여액	
2	안전관리자 ( 겸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금액 10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150인 미만 : 1인</li> </ul>	• 직책수당 ( 월급여액의 10 %미만 )	
3	안전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 11 조 제 1 항 관련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li> </ul>	• 직책수당 ( 월급여액의 10 %미만 )	
4	감 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감시 또는 경비업무에만</li> </ul>	• 월급여액	

연번	세 목	적 용 기 준	지 급 기 준	비 고
5	중기차량 유도원	종사하는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구조물 통당 1인, 토목 공사는 공사금액 20억원당 1인</li> <li>◦ 중기차량의 유도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li> <li>◦ 중기차량 보유 5대당 1인</li> </ul>	• 월급여액	

2.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위생보호구등 각종 안전보건용품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번	세 목	적 용 기 준	지 급 기 준	비 고
1	안 전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형 : 낙하 및 비래에 대한 위험방지 및 경감용</li> <li>◦ B형 :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및 경감용</li> <li>◦ AB형 : 낙하,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및 경감용</li> <li>◦ AE형 :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및 경감, 머리 부위감전 위험방지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동원계 획서상에 기록되어 있는 1일 최대동원근로자수에</li> </ul>	소요의성 능을 상 실한 안전모는 교체

연번	세 목	적 용 기 준	지 급 기 준	비 고
		○ ABE형 : 낙하, 비래 및 추락 에 의한 위험방지 및 경감, 머리부위감전 위 험방지용		
2	안 전 화	○ 충격 및 절림으로부터 발보 호용 ○ 대전 및 감전방지용	• "	
3	장 화	○ 감전방지용	• 해당작업이 있을때 당 해근로자수 에 준하여 지급	
4	안 전 대	○ 2미터이상의 고소작업등 추 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	• "	
5	안 전 장갑 - 전기작업 용 고무 장갑	○ 300V이상의 전기작업자의 감전차해 예방용	• "	
	- 용접용 가죽제 보호장갑	○ 아크 및 가스용접작업시 화 상 및 감전예방용	• "	
6	보 안 경			

연번	세 목	적 용 기 준	지 급 기 준	비 고
	- 차광안경 - 유리보호 안경 - 프라스틱 보호안경 - 도수렌즈 보호안경	○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작업 ○ 미분, 칩등 비산물로부터 눈 보호용 ○ 미분, 칩등 비산물로부터 눈 보호용 ○ 시력장애자를 위한 빛이나 비산물 및 기타유해물질로부터 눈 보호용	· "	
7	보 안 면			
	- 용접용 보안면	○ 용접작업중 유해광선 및 파 편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 보호용	· 해당작업이 있을때 당 해 근로자 수만큼 지 급	
	- 일반 보 안면	○ 각종비산물 및 유해액체의 작업장	· "	
8	방진마스크	○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장소 ( 산소결핍 장소는 제외 )	· "	
9	방독마스크	○ 각종유해가스의 발생장소 - 메탄, 탄산, 유화수소, 일산 화탄소, 이산화탄소등 ( 산소결핍 장소는 제외 )	· "	

연번	세 목	적 용 기 준	지 급 기준	비 고
10	송기마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소결핍이 있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탱크, 쟁, 지하실, 잠함등</li> </ul> </li> <li>○ 산소결핍우려가 있는 장소의 비상상태 대비</li> </ul>	• "	
11	면 마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치 이상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장소</li> </ul>	• "	
12	산소호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소결핍장소</li> <li>○ 고농도의 유해가스나 연기가 있는 경우</li> <li>○ 기타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목, 어류, 식품등</li> </ul> </li> </ul>	• "	
13	공기호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소결핍장소의 작업환경측정 등 단시간 작업</li> <li>○ 기타 산소농도가 작거나 유해가스농도가 허용치이상인 작업장</li> </ul>	• "	
14	방음보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렬한 소음 (90db이상)을 발생하는 작업장소</li> <li>○ 발파, 착암, 건설기계사용</li> </ul>	• "	
15	반사조끼 ( X반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호수</li> <li>○ 야간작업자등</li> </ul>	• "	

연번	세 목	적 용 기 준	지 급 기 준	비 고
16	용 접 ( 치마, 토 시, 자켓 )	○ 용접작업시 각종비산물로 부 터 피부보호용	• "	
17	구 명 조 끼	○ 수상작업시	• "	
18	방 진 장 갑	○ 진동발생이 있는 기계기구를 다루는 작업	• "	
19	안전발파등	○ 발파작업장	• 필요수량	
20	안 전 깃 발	○ 안전깃발을 필요로 하는 작 업장	• "	
21	랜 텐	○ 랜턴을 필요로 하는 작업장	• "	
22	신 호 등	○ 신호등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장	• "	
23	기 타	○ 기타 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 보건장구	• "	

3.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사내안전보건  
교육 및 기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등에 소  
요되는 비용

연번	세 목	적 용 기 준	교 육 기 관	비 고
1	안전보건관 리 책임자			

연번	세 목	적 용 기 준	교 육 기 관	비 고
2	( 신규 )	○ 선임후 1년이내	○ 해당교육기관	
	( 보수 )	○ 신규 교육후 매 2년	○ "	
	안전관리자			
	( 신규 )	○ 선임후 1년이내	○ "	
3	( 보수 )	○ 신규 교육후 매 2년	○ "	
	사 업 장	○ 사업장 안전강사 양성과정 :	○ "	
4	안 전 강 사	필요시 년 1회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	○ 신규채용시 교육	○ 공사현장	
	* 초빙강사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료, 교육	○ 정기교육 : 월 1회 집체교육	○ "	
	자료 및	○ 기타근로자 안전교육 또는		
	기자재구	세미나		
	입비포함	○ 현장 또는 해당교육기관		
	5 자격, 면허	○ 법제 47 조에서 규정한 자격,	○ 해당교육	
	취득 또는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기관	
	기능습득교	위한 교육		
	육			

4.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정리정돈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번	세 목	적 용 기 준	관련기관	비 고
1	안전보건 진단	○ 법제 49조에서 규정한 안전 보건진단	○ 해당기관	
2	작업환경 측정	○ 분진, 소음, 산소결핍 및 유 해작업장	○ "	
3	안전점검	○ 현장의 안전점검을 위한 외 부전문가 초빙수당 등		
4	각종 가스 탐지기	○ 해당작업장		
5	감시용 모니터	○ "		
6	산소 농도 측정기	○ "		
7	정리정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구조물 등당 1인</li> </ul> </li> <li>○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금액 20억원 당 1인</li> </ul> </li> <li>○ 안전시설 보수유지, 정리정돈</li> </ul>		

5. 건강진단비, 구급기재등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연번	세 목	적 용 기 준	회수 및 수량	비 고
1	건강진단			
	○ 특 수	○ 법 제 28조에서 규정한 유 해,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근 로자	○ 년 1회이상	
	○ 일 반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외의 근로자	○ 1회 / 1년	
	○ 임 시	○ 유해물질로 인한 중독여부 판단 또는 질병원인의 발견	○ 필요시	
2	구급기재			
	○ 구급용 구 및 재료	○ 부상자의 응급처치용	○ 당해 건설 현 장 설정을 감안, 필요 수량	
	○ 의료구 급합 구급낭	○ 부상자의 응급치료		
	○ 구급기	○ 고압실 작업장	○ "	

6. 근로자의 작업중 안전화보를 위한 안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연번	세 목	적 용 기 준	설 치 기 준	비 고
1	보호난간	○ 추락, 전도등의 재해예방이 필요한 작업장소	○ 해당작업장	
2	개구부 울	○ "	○ "	
3	안전대 결 이줄	○ 안전대 결이줄이 별도로 필 요한 작업장소	○ "	
4	추락방지용 방망	○ 추락재해예방이 필요한 작업 장소	○ "	
5	기 타	○ 법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보 건시설로서 내역서에 계상되 지 아니한 시설비	○ "	

7.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이행을 위하  
여 필요한 비용

연번	세 목	적 용 기 준	수량, 수수료	비 고
1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사, 방 화용수등 )	○ 화기나 아크용접기를 사용하 는 터널내부등의 작업장소 ○ 배전반, 변압기, 차단기 등의 설치장소	○ 해당현장실 정을 감안 필요수량	
2	화재탐지기	○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 소	○ "	

연번	세 목	적 용 기 준	수량, 수수료	비 고
3	경보 또는 연락용 설 비, 장치 ( 싸이렌, 인터폰, 전 화기, 벨등 )	○ 각종 돌발사태 발생시 ( 발파작업, 화재발생, 토석의 붕괴, 터널내부의 낙반, 출수 등 ) ○ 고압실내 ○ 깊이 20 m초과하는 굴착작 업장	○ " "	
4	세이프티 콘	○ 라바콘	○ "	
5	각종 안전 완장	○ 안전관리자등의 표시	○ 안전보건관 계자 전원 1인당 1매	
6	유해 · 위험 방지계획서	○ 심사 및 확인에 소요되는 수수료		
7	기계 · 기구 및 설비등의 방호조치	○ 법제 33 조에 의한 유해 · 위험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에 소 요되는 비용		
8	기계 · 기구 및 설비등 의 검사	○ 법제 34 조에 의한 유해 또 는 위험한 기계 · 기구 및 설 비등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검사 기관	
9	기 타	○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 전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 한 비용 중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항		

고시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현행,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li> </ul> <p><b>제 1 조 (목적)</b> 이 고시는 산업 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장의 산업 재해예방에 필요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산정기준을 제정,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 2 조 (용어의정의)</b>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p> <p>1.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 ”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그 주요 내용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고시제목 계상 및 사용기준”</li> </ul> <p><b>제 1 조 (목적)</b> ..... ..... 제 30 조 ..... ..... ..... ..... 계상 및 사용기준 ... .....</p> <p><b>제 2 조 (용어의정의)</b> ..... ..... .....</p> <p>1. 좌 동</p>	<p>변경</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1 과 같다.		
2 . “기본비용”이라 함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서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 삭 제	
3 . “별도계상비용”이라 함은 기본비용 이외의 각공사 현장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한 비용을 말한다.	3 . 삭 제	
4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무부 회계예규 2200, 04-105-5 1989.1. 1.)”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 지정의 금액을 말한다.	4 . .....	..... ..... ..... ..... ..... .....
5 .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 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령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상의 .....	
제 3 조 ( 적용범위 ) 이 고시는 산	제 3 조 ( 적용범위 )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 건설 공사로서 총공사금액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 4 조 (공사의분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에 의한다.	제 4 조 (공사의분류) 좌 동	
제 5 조 (산정기준)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설공사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비용을 계상한다. 1.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	제 5 조 (산정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한다. 다만, 재료비에 관급 및 지급재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좌 동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계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재 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에 별표2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 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재료비와 직 접노무비의 합계액에 별표2 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 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2. 좌 동	
3. 법령에 의한 안전조치 이 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비용 이외에도 각 공사 현 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한 방법으로 별도계상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3. 삭 제	
제 6 조 ( 계상시기 ) 건설공사를 타 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 성시 제5조의 기준에 의한 안	제 6 조 ( 계상 및 기록 ) ..... ..... 도급하는 자 및 건설 업을 행하는 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계상하고 그 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p><b>제 7 조 ( 안전관리비의 사용 ) ①</b></p> <p>원청자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고시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내에서 하수급인에게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원청자의 책임하에 하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b>② 사업주는 이 고시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별표 1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방지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b></p>	<p><b>제 7 조 ( 사용기준 )</b>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p> <p>현행 제 7 조 : 시행 규칙 제 32 조 에포함. 개정(안) 제 7 조 : 추가됨.</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별표1】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 주요내용</p> <p>1. 기본비용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통으로 산정해야 하는 안전관리비)</p> <p>가.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p> <p>나. 안전보호구, 위생보호구, 안전장구 등 각종 안전보건장구에 소요되는 비용</p> <p>다.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각종 안전보건직무교육 및 사내 안전보건교육등에 소요되는 비용</p> <p>라.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정리정돈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별표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주요내용</p> <p>1. 삭 제</p> <p>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p> <p>2.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위생보호구등 각종 안전보건용품등에 소요되는 .....</p> <p>3. ..... 및 기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등에 소요되는 비용</p> <p>4. 좌 동</p> <p>5. 건강진단비, 구급기재등의 확행.</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보에 소요되는 비용	별도계상 비용내용
	6. 근로자의 작업중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
마.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 이행을 위하여 공 통으로 필요한 안전보건관 리비	7. .....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이 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별도계상비용 ( 각 건설공사현 장 특성에 따라 적정한 방 법으로 적산하는 안전관리비 )	2. 삭 제	
가. 안전탑, 안전표시, 경고설비 에 소요되는 비용	가. 삭 제	
나. 교통정리와 안전감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삭 제	
다. 추락, 낙하, 붕괴, 낙반, 방 지설비, 방호책, 바리케이트, 건설기계안전 안전장치, 조 명시설등 법령상의 안전설 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삭 제 ( * 추락, 전도등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은 6. 항 에 포함 )	
라. 건강진단비, 위생설비, 급수 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라. 삭 제 ( * 건강진단비, 구급기재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에 소요되는 비용 마. 기타 현장조건에 따라 법 령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 을 위하여 별도계상에 필 요한 비용	등은 5. 항에 포함) 마. 삭제	
【별표 2】 건설공사종류 및 규 모별 기본비용 산정 기준표	【별표 2】 건설공사종류 및 규 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별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추 가

## 참 고 문 헌

1. 건 설 부 : '90년도 건설표준 품셈
2. 노 동 부 : 산업재해분석, 1986-1989
3. 국립노동과학연구소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관한조사 연구, 1987
4. "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출기준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조사 연구, 1988
5. 공 단 기 술 위 원 실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정착화에 관한 연구
6. 대 한 건 설 협 회 : 건설재해예방 심포지움, 1988
7. 한국산업경제연구소 : 건설공사 분류체계와 건설업 면허제도 개선연구, 1986
8. 재 무 부 회 계 예 규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9. " :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10. 노 동 성 : 건설공사의 안전, 1987
11. 박 필 수 :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1990

##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 정착화 연구

---

발행일 : 1990. 12.

발행인 : 원 장 金 元 甲

연구자 : 책임연구원 柳 永 植

책임연구원 朴 一 哲

발행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토목·건축연구담당실

주 소 : 인천직할시 북구 구산동34-4

T E L : (032) 518-6482

---